
2022년 「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」 공고 [자유공모]

2022. 4.



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

2022년 「충남 에너지산업 소재·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」 공고 [자유공모]

충남지역 에너지산업 소재·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022년도 「충남 에너지산업 소재·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의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19일

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

- 다 음 -

1. 사업 목적

- 충청남도의 미래 중점사업 영역인 에너지산업 소재·부품 분야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선제적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 선점과 지역 미래산업 활성화
- 본 과제는 충청남도 지역 유망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출연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제임

2. 사업내용

가. 지원분야 : 에너지산업 전 분야

○ 산업기술분류표(제16조 관련) 에너지·자원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지원

- 산업기술분류표 에너지·자원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의 국산화 연관 소재/부품 부문(실현기술단계 : TRL 7이상)

※ 단, 산업기술분류표 에너지·자원 부분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(중분류)은 제외

나. 지원대상

○ 충청남도 소재지의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*으로 3개 이내 참여기관(기업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

* 주관연구기관의 본사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간에 따라 가산점 부여하며, 충청남도 소재 기업참여 원칙임

- 본 과제는 중소기업 육성과 유망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의 자체 출연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제이므로,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컨소시엄형으로 사업을 진행

※ 충청남도 내에 본사가 위치하여야 하며, 본사 외 사업장 보유 시 충청남도에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위치하여야 함 (서류 접수 시, 증빙必)

- 참여기관으로 대·중견기업, 공기업, 기관(비영리), 대학 등 참여 가능

※ 참여기관은 충청남도 외 소재 기관(기업)도 참여 가능함

다. 지원기간

○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, 해당연도 말 중간점검 컨설팅을 진행

- 모든 신청 컨소시엄은 총 연구개발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※ 당해연도(2022년)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

라. 지원규모

- '22년도 지원 사업비: 560,000천 원 이내('23년, 24년도 동일 규모로 지원)
- 지자체 연구개발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연간 최대 200,000천 원 이내 신청 가능.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교부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우수 컨소시엄에게는 최대 50,000천 원까지 연구개발비 증액 교부

마. 지원조건

- 과제 총 사업비: 지자체 출연금 +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
-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사업 공동 운영요령(제18조제2항)」 및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」 기준에 준하여 민간부담금 부담

-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, 현금, 현물 매칭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이며, 현금부담비용은 총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임
- 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, 해당 중견기업은 민간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35% 이상을 매칭하며, 총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 현금으로 출자해야 함
- 대기업(민간 및 공사 포함)이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,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67% 이상을 매칭하며, 민간부담금의 60%이상 현금 출자 필수
-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, 민간부담금은 필요 시 부담할 수 있음

※ 사업비 자원(최소요건 사례)

단위: 천원

컨소시엄 \ 자원	지방비 (출연금)	민간(매칭)		민간자금계	총사업비계
		현물	현금		
중소기업+(비영리)	180,000	40,500	4,500	45,000	225,000
중소기업+중견기업+(비영리)	180,000	61,290	6,810	68,100	248,100
(예시)중소기업	100,000	22,500	2,500	25,000	125,000
(예시)중견기업	80,000	38,790	4,310	43,100	123,100
중소기업+대기업+(비영리)	180,000	87,500	100,000	187,500	367,500
(예시)중소기업	100,000	22,500	2,500	25,000	125,000
(예시)대기업	80,000	65,000	97,500	162,500	242,500

바. 참여인력 요건

- 과제 참여인력 요건은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
- 사업의 참여연구원 참여율은 최소 20% 이상(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30% 이상)이어야 함. 단,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,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
 -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기업의 임원 이상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, 참여기관 책임자는 기업의 부장(기관의 팀장)급,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신청 가능
 - 참여연구원은 참여기관(기업)에 소속된 기업연구진, 기관연구진, 대학의 학·석·박사과정, 박사후 과정, 계약교수 등 가능
- ※ 본 시행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요건은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」 및 관련규정에 따름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기간 : 2022. 4. 20.(수) ~ 5. 16.(월) 18:00

공고기간 : 2022. 4. 19.(화) ~ 5. 16.(월) 18:00

나. 신청방법: 전문기관(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)으로 방문접수

○ 신청기간 내, 평일 10:00 ~ 18:00에 방문 접수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휴일(토·일요일)은 접수 불가

-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USB에 담아 인쇄본 10부와 함께 제출

○ 제출처 :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, 1층 D105호

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김선영

다. 제출서류 :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일체

구 분	내 용		수행기관
연구개발 계획 접수	- 필수 및 해당서류 제출(오프라인) ※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		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
	필수	1. 연구개발계획서 2. [첨부1] 선행기술조사 요약보고서 3. [첨부2] 정부과제 참여현황 확인서 4. [첨부3]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5. [첨부4]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	
	해당	1. [첨부5]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2. [첨부6] 신규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3. [별첨] 연구장비도입계획서	
	증빙 서류	법인등기부등본(과거 변동사항 모두 포함), 중소 (중견)기업확인서(대기업은 편입 및 제외 공문)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	
요건검토	수행기관 제출서류 확인		전문기관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기간 내에만 미비 서류 보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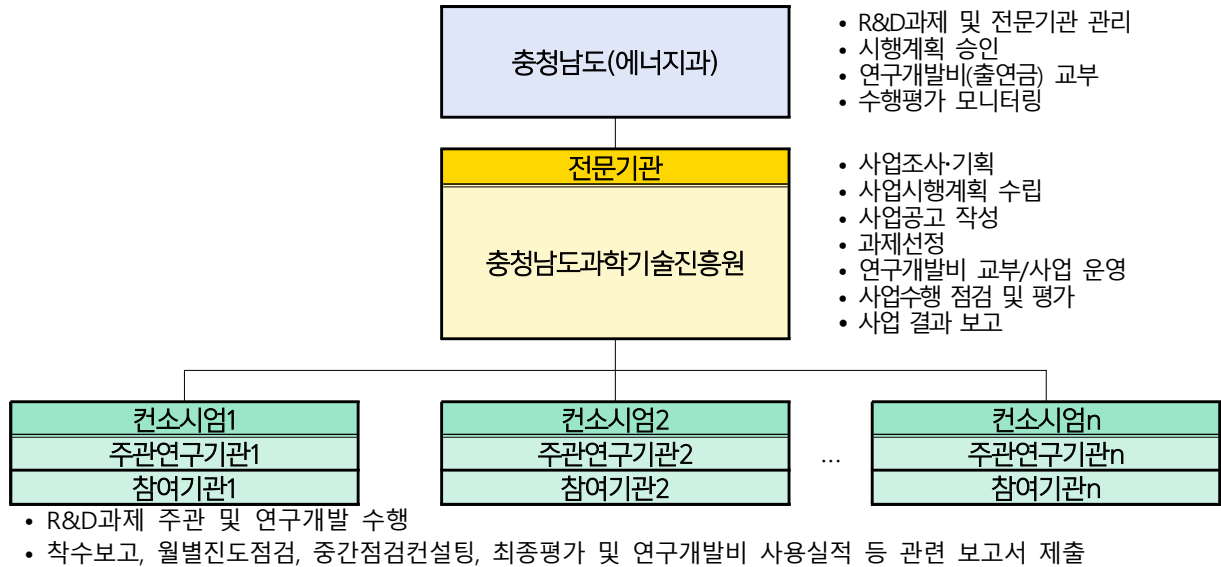
라. 사업문의

○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및 사업 문의

- 담당자 김선영 연구원 : 041-540-3815, goforit@ciast.re.kr

4. 사업추진

가. 추진 체계



나. 추진 일정

구분	내용	주체
사업 공고 및 안내 (‘22.4.19.)	•신규과제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(설명회(필요시), 공고문 - 온라인)	전문기관
계획서 제출 (‘22.4.20.~’22.5.16.)	•(수행기관)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- 오프라인(파일 및 인쇄본 10부 제출)	전문기관 수행기관
선정평가 (5월중~5월말)	•요건검토→전문가평가(서류→발표평가) •사업수행 여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	평가위원회 전문기관
협약 및 과제수행 (6월초)	•세부협약(전문기관↔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) •연구개발비 지급(전문기관↔주관연구기관) •연구계획에 의거 과제 착수보고 •월별진도보고서 제출(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→전문기관)	전문기관 수행기관(컨소시엄)
중간점검 컨설팅 (12월 중)	•당해년도 연구개발 성과 점검(전문기관→주관연구기관) •당해년도 사업비 정산(주관연구기관→전문기관) •당해년도 연구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 (전문기관→충청남도)	전문기관 평가위원회 (충청남도 참관)

○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○ 중간점검 컨설팅 결과 사업진행 및 성과가 미비할 경우, 특별평가를

시행할 수 있으며,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협약 해지 또는 차년도 사업비는 삭감될 수 있음

○ 전체 사업일정

구분	2022				2023				2024				2025	
	1Q	2Q	3Q	4Q	1Q	2Q	3Q	4Q	1Q	2Q	3Q	4Q	1Q	2Q
사업기획 및 공고														
협약 및 과제 수행														
상시점검														
중간점검 컨설팅														
최종평가														

나. 사업기간

○ 총 사업기간: 2022.06.01. ~ 2024.12.31.(총 3년, 31개월)

-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협약을 1회 진행하고, 협약기간 중 ‘중간점검 컨설팅(2회)’, ‘최종평가(1회)’를 진행하여 평가를 최소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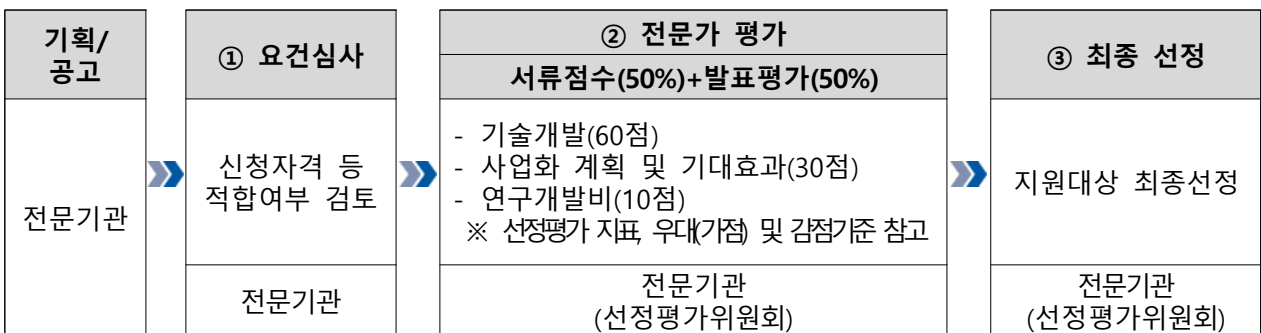
- 상시점검을 통해 과제수행 중 애로사항 및 과제 추진상황 확인

○ 2022년 사업기간: 2022.06.01. ~ 2022.12.31.(8개월)

- 2022년 사업은 착수보고, 중간점검 컨설팅 및 상시점검(월별 보고) 진행 예정

5. 선정평가

가. 평가절차



나. 선정평가 지표

중분류	소분류	평가항목	배점
기술개발 계획	지원분야 적합성	· 제안 주제의 지원분야 부합성 · 충남지역 산업 기여도	10
	기술개발 개요	· 기술개발성과와 사업목적 부합성 · 기술개발 차별성, 질적 우수성 · 선행 제품(기술)의 문제 인식	10
	사전준비 및 능력	· 사전준비 우수성(선행기술조사) · 기술개발실적 우수성 · 핵심(원천), 유사 기술 보유 정도 ·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	10
	추진체계	·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· 수행기관별 역할분담 적정성	10
	연구자원	· 수행기관 역량과 능력 보유 · 참여연구원 역할분담 적절성 · 신규인력의 채용 여부	10
	목표 추진내용	· 정량화 목표 및 방법 제시 여부 · 제시목표의 질적 우수성 · 연차별 계획과 내용의 실현 여부 · 기술적 방법 타당성	10
	소 계		60
사업화 계획 기대효과	사업화 계획	· 사업화 전략 우수성, 시장 예측, 분석 타당성 · 개발성과의 실용화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	15
	매출효과	· 매출목표 타당성, 실현 가능성 · 신규시장 창출, 해외 진출 가능성 · 국산화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	5
	수출효과	· 수출목표 타당성, 실현 가능성	5
	고용효과	· 고용목표 타당성, 실현 가능성	5
	소 계		30
연구개발비	연구개발비 편성	· 연구개발비 산정의 부합성/타당성	10
	소 계		10
합 계			100

※ 우대(가점) 및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수행기관 선정

○ 우대(가점) 및 감점 기준

구분	우대 및 감점 기준	배점
가점	○ 최근 2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, 신뢰성(R)인증, 우수디자인상품(GD)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(보유 1건당 1점)	최대 +4
	○ 참여기관에 중견기업(대기업, 공사 포함)이 포함되어 총사업비의 50%이상 매칭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경우	+3
	○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(기관)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/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(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)	+1
	○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 채용(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)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	+1
	○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(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)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	+2
	○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본사가 충청남도 내에 4년 이상 소재한 경우 (매년 0.5점씩)	최대 +2
	소계	최대 +5점
감점	○ 최종평가가 불성실중단·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	-1
	○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기관, 참여기관 등)의 경우	-1
	○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최근 3년 이내에(접수마감일 기준)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,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	-1
	소계	최대 -3점

6. 협약

가. 협약 체결

-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은 평가의견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별도 제출 후 협약을 체결함
-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」에 따라 3년(28개월) 협약을 체결함

나. 협약 및 변경, 해약

-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」 제20조(협약의 변경) 및 21조(협약의 해약)에 따름
- 연구기관, 연구책임자, 기술개발사업비, 연구목표, 연구기간,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양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작성해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
 - ※ 특히,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, 국내외 기관 파견(교육훈련, 출장, 연수 등)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에 알려야 함(참여기관을 포함).
 - ※ 협약변경은 연구개발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
 - ※ 참여기관의 협약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
- 과제 협약 변경 요청 시에는 수행기관(기업, 기관) 간 미리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
- 참여기관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관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으나, 변경된 참여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의 과제 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함
- 선정 이후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을 해약함

-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부도 및 법정관리,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
-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, 연구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됨

7.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

가. 연구개발비의 지급

○ 연구개발비 구성 : 직접비(인건비 포함) + 간접비

※ 단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

○ 연구개발비 지급 :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(주관 연구기관)에 연구개발비 지급

○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: 협약체결 후 1개월 내,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※ 단, 연구개발비 지급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

○ 제출서류 : 연구개발비 교부신청서 및 기타서류

※ 연구개발비 교부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, 통장사본, 민간현금 매칭자금 입금증 등을 함께 제출

나.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사항

○ 인건비: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, 기업,

기타 기관의 책임 및 참여연구원은 현물 계상이 원칙

- ※ 단,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며,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」에 따라 인건비 계상

- 비영리기관 :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
- 대학 :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,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 등,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(박사후 연구자 등)
- 외부 참여연구자 :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
- 영리기관(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)
 - 가. 중소·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)
 -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※ 청년의무채용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(현금)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함
 - 나.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)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
 - 다.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.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2호에 따름
 - 라.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)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마.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(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)로 근무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
 - 바.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사.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,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아. 산업위aggi지역에 소재한 중소·중견 기업의 경우 도 지원 연구개발비의 50%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
 - 자.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소유로 하는 사업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 인정하는 분야.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
-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

- 학생인건비는 월별 학생 인건비 계상률이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,000천 원 이상,

석사과정은 월 1,800천 원 이상, 박사과정은 월 2,500천 원 이상 산정

※ 학생인건비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%이며,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건비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함.

○ 간접비: 영리기관은 직접비(현물 제외)의 10%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하고, 비영리기관 및 대학의 간접비는 직접비(현물 제외)에 간접비 고시비율을 곱한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14조에 따름

※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 및 대학의 경우 17% 이내로 산정

※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산정기준,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」 31조에 따름

다. 연구개발비 관리

○ 연구개발비 사용 :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 책임자가 발의하고 연구개발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

- 연구개발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 별도 관리 필수

○ 연구개발비 관리 :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

○ 기술료 징수 :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대상임

○ 관련규정 준수의무 :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시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와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(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)과 협약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

※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(연구책임자 포함)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

관리·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, 감사,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즉시 보고해야 함

라. 연구개발비 정산

- 주관연구기관은 규정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에 따라 모든 연구개발비를 사업기간 중 집행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은 자체회계감사를 통해 이를 점검할 수 있음
 -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종료 시,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명세를 포함한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
 - 연구개발비 집행의 합목적성 여부 및 관리상태
 - 관련 규정 및 협약서상의 제반 규정 준수 여부
 -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의 구비현황 및 적정성 여부
- ※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 관련 서류는 「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의 서식 제5호~9호 양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제출

8. 유의사항

가.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

-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은 사업참여 제한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에 의해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과제 이내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과제

이내인 경우만 신청 및 참여 가능

○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참여기업만 신청 및 참여 가능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‘BBB’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단,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)
-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,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NTIS 내 과제참여·관리/유사과제 검색을 통해 도출된 검색결과 ‘유사과제 검색결과증’ 제시(연구개발계획서 내 반영)
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의 정보자료실/사업정보자료/지원과제정보검색(2012년 이후) 검색 결과 연구개발계획서 내 반영

9. 기타사항

가. 보안사항

- 기술개발과제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, 보안 과제는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
- 세계 초인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
-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

나. 적용 규정

○ 동 사업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과 「충청남도 에너지조례」에 근거하고, 「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및 아래 근거 규정 및 요령을 적용

- 관련 근거 규정

번호	관련규정	
1	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	충청남도 고시 제2022-39호
2	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	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
3	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4호
4	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5호
5	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	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0호
6	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88호
7	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262호
8	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84호
9	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	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3호